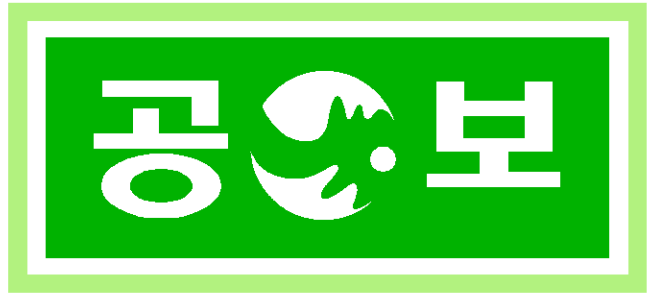


# 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구 관	기 관 의 장



**제 705 호 2011. 8. 22(월)**

## 고 시

○울산광역시북구고시 제2011-75호[특정관리대상시설(지역)의 지정(해제) 고시] ..... 2

## 공 고

-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-524호[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] ..... 3
-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-525호[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 ..... 5
-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-526호[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입법예고] ..7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**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   편집: 기획홍보실(☎219-7207 행정7207)**

울산광역시북구 고시 제2011 - 75호

## 특정관리대상시설(지역)의 지정(해제) 고시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(해제)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11년 8월 22일

###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

□ 특정관리대상시설(지역) 지정(해제) 조서

대상시설(지역)			지정(해제)사유	지정 등급	안전취급·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	비고
시설명	소재지	소유자 (관리자)				
꿈에랜드	명촌동 106B 9L	조경희	시설물 철거	B	-	해 제
구송정교	창평동 1207-2	북구청 건설방재과	시설물 철거	B	-	해 제
태연재활원	산하동 161-1	이동성	시설물 폐쇄	B	-	해 제
월드메르디앙 (건축공사장)	매곡동 330-2외 145	월드건설(주)	사용검사(준공)	A		해 제
태연재활원	대안동 156	이동성	일제조사 신규지정	A		신 규
한신휴플러스 (건축공사장)	천곡동512-6 외 24필지	한신공영(주)	일제조사 신규지정	A		신 규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11- 524 호

### 울산광역시 복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

울산광역시 복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8 월 22 일

## 울 산 광 역 시 복 구 청 장

### 1. 제정이유

2011. 8. 5일부터 『울산광역시 복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』가 시행됨에 따라 세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사전검사의 우선검사 대상(안 제2조)

-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의2(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)에서 규정한 편의제공 대상시설에 국한함.

1. 동주민센터, 우체국, 보건소 및 공공도서관
2.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·식물원
3.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
4.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
5.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
6.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(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정한다)

**3. 의견 제출**

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사회복지과장, 전화 052-219-7344, 팩스 052-219-7359, 메일 buk2006@korea.kr)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**4. 참고사항**

제정 규칙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올려놓겠습니다.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.

**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1- 525호**

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8월 22일

**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**

**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**

**1. 개정취지**

- 음식물류폐기물 수집·운반체계 구축과 재활용 촉진과 같이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재 조례를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함.

**2. 주요내용**

**가. 조례 제명변경**

- 음식물류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
⇒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

**나.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기본원칙 제시(제4조)**

**다. 관계자의 책무 부여(제5조 ~ 제7조)**

- 지방자치단체는 발생억제 시책수립·시행
- 사업자, 주민은 발생억제 및 지자체 시책 협력

**라. 발생억제·감량 우수가구 및 업소에 대한 지원금 등 지원(제8조)**

**마.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세부시행사항 명시(제9조)**

- 종량제 시행지침 및 주민부담을 고려한 수거·처리수수료 산정
-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요율 차등 부과

**바.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강화**

- 감량의무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 변경 및 사업장 면적 기준 변경(제2조)

-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시 발생억제방안 명시(제8조)
-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 사용(제17조)
-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지불 및 계약서에 수수료 명시(제9조, 제18조)
-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 지도점검 및 과태료 기준 강화(제19조~제21조)

#### 사. 2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사업시행자 의무조항

-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 및 가정용 전용수거용기 세대별 배부 의무화(제14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4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- 환경미화과, 전화 219-7383, 팩스 219-7399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 사항 등

### 4. 기 타

『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』 전부개정안의 전문은 우리구 환경미화과에 비치하여 예고 기간 동안 공시합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1-526호

「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울산광역시 북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1 년 8월 22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**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입법예고**

**1. 제정이유**

「폐기물관리법」 개정시행(법률 제10389호, 2011. 7.24)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 업체의 평가 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장비·근무 여건 개선을 유도하고, 나아가 청소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코자 함.

**2. 주요내용**

- 가. 평가대상 업체는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를 평가대상으로 함(안 제5조)
- 나. 대행업체의 평가계획 수립, 평가지침 작성, 평가실시, 현장평가단 구성사항을 포함 한 평가절차 규정(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)
- 다. 평가위원회의 구성, 기능, 위원장의 직무,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등 규정(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)
- 라. 대행업체의 평가후 평가결과와 활용에 관한 사항 마련.(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)

**3. 의견제출**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. 9.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:환경미화과장, 전화:052-219-7382, FAX:052-219-7399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4. 기타

『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』 제정안 전문은 우리구 환경미화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.